의사출신 변호사 고도법률상담실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 辯護士**
Http://www.legalexpert.co.kr
Tel. 02) 3355-7000 | Fax. 02) 6280-7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699-16번지 동현빌딩 7층

의료사고와 해당 판례고찰
(의료행위, 이완성 출혈 측면)

■ 판례 1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진찰이라고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은 치료행위에 속한다.(대법원1986.10.14. 선고 86도1678판결)

■ 판례 2

의료사고에 있어서 예외적이고 희귀한 합병증에 대해 과실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유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배경설명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의료과실 사건에 있어서 어떤 증상이나 결과의 발생사

유가 여러가지 있을수 있는경우 그리고 사유별 원인력(발생빈도)에 차등이 있는경우 일반적인 사유를 당해 사건의 발생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원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즉 발생빈도가 낮거나 희귀하고 예외적인 사유를 발생원인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배경설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그래야만 그 인정은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배경설명이 없이 만연히 보다 일반적인 사유를 배척 한다면 이는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할수 없을 것이다.그리고 그러한 법리는 의료감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의료감정인은 발생빈도가 낮은 사유를 당해감정사건의 발생사유로 지적 하려면 사리정연한 설명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사유가 당해사건에서 배척되어야 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할것이며 그렇지 않고 만연히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 사유중 원인력이 약한 사유를 지적하여 회보한다면 그회보의 신빙성이 희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빙성이 희박한 감정내용을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서는 이를 보완하는 다른 감정이나 진술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내린 바와 같 은 결론 즉 동피해자에게 급성충수염의 발생이 있었고 충수염수술후의 합병증으로 우측 늑막삼출, 횡경막하농양, 마비성장폐쇄로 인한 구심성루프의 내압상승이 십이지장절주부의 누출을 유발하여 범발성복막염이 된것이라는 결론이 유지될수 있기 위하여는 위의 여러곳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퍽 예외적이거나 희귀한 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유를 배척할수 있는 설득력을 지닌 것은 아닌

것이다.(헌법재판소1990.12.26결정 89헌마198)

■ 판례 3

의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검사는 전문직분야의 당사자의 주장에 만 집착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 의료사고사건은 의료라고 하는 극히 전문직 분야에 관한 분쟁인데 일방당사자인 의사는 자신의 모든지식,경험을 동원하여 면책의 방법을 강구 하는데 반하여 상대당사자인 환자나 가족은 의료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사와 정면으로 대결하여 자신의 주장을 조리있게 전개하고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뿐만아니라 의료과실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도 역시 의료의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는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기가 어려우며 신종 질병의 부단한 발생,치료방법 의 끈임없는 개발 및 변경으로 인하여 정형적이고 고정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의료과실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가족이 정당한 보상이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과 동시에 비슷한 의료과오가 반복됨으로써 새로운 희생자가 속출하게 되며 그결과 의료계의 공신력은 크게 실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어서 당사자의 주장에만 집착하지 않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진력하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에게 부하된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는바,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상의 평등의 이념을 구현할수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11.19 결정 89헌마116)

■ 판례 4

의사의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할 수단채무이다.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진료를 위한 검사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혈관조영술은 혈관촬영을 위하여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혈관경색이 밝혀질 경우 그 치료를 위하여 수술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수술을 전제로 한 혈관검사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혈관조영술이 고령이고 심장이나 뇌순환이 약한 환자에게 심장혈관기능 쇠퇴로 인한 심근경색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으나 이는 이사건과 같은 대퇴동맥검사가 아닌 심장검사(관상동맥촬영)의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인데,의사등은 조영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위 환자의 심기능장애,알레르기반응,혈압,호흡,심전도 등 건강상태를 사전검사하여 이상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적법 하게 인정되므로 혈관조영술 검사방법을 채택한 자체가 잘못이라는 위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1988.12.13선고다카1491판결)

■ 판례 5

의사지시로 간호사의 주사후 야기된 후유증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간호사의 주사로 신경마비가 후유증으로 생긴 경우, 환자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일본 후크지마 지방재판소, 1972. 7. 21. 민사 제1부 판결).

■ 판례 6

치과의사의 안면 성형수술 시행이 의료법 위반인지의 여부와 치과의사의 안면 성형수술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치과의사가 안면의 성형수술을 하였다하여 이를 의료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제2형사부, 1972. 3. 28. 판결).

■ 판례 7

추상적으로 임신부가 빈혈이고 저혈압이며 심장이 약하다는 사실과 태아가 16주 정도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이완성자궁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1984.07.010. 선고 84다 카466판결)
(대법원 1984.07.010. 선고 84다 카466판결)

■ 판례 8

이완성자궁출혈의 증후가 있으면 자궁적출을 하거나 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혈증상으로 보아 이완성자궁으로 인한 출혈이라는 것을 예견 하였거나 예견할수 있었을 것이므로 의사로

서는 출혈의 근원을 제거하 기 위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궁절개수술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 그출혈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1971.8.31선고 71도1254판결)

■ 판례 9

소파수술후 자궁외임신이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행위라 하여 과실이 아니다. 최초의 소파수술이 태아조직으로 볼수 있는 내용물이 나왔던 점에 근거한 판단으로서 그와 같은 판단이 현재의 의학이론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점이라는점,피해자를 자궁외 임신으로 의심하는 경우에도 진단목적으로 소파수술을 시행 할수도 있다는 점,2차 소파수술로 인한 상처가 지극히 경미한 정도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제2차 소파수술이 피해자의 자궁외임신을 오진한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의사의 통상적인 진 료행위이다.(대법원 1986.6.10선고 85도2133판결)

■ 판례 10

이완성(弛緩性) 자궁출혈(子宮出血)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일본 동경 지방재판소, 1976. 3. 15. 판결)

(이완성 자궁출혈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은 담당의사의 과오)